

성매매피해자 ([]지원시설 []자활지원센터 []상담소) 변경신고서
([]시설장(센터장, 소장) []명칭 []소재지 []입소정원)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법인명	전화번호		
	주소			
시설 개요	지원시설(자활지원센터, 상담소)명			
	지원시설장(센터장, 상담소장) 성명			

변경 연월일

변경사항	변경 전	시설장(센터장, 상담소장) 성명	생년월일
		명칭	소재지
		입소정원	
	변경 후	시설장(센터장, 상담소장) 성명	생년월일
		명칭	소재지
		입소정원	
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([]지원시설 []자활지원센터 []상담소)의 ([]시설장(센터
장,상담소장) []명칭 []소재지 []입소정원)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통지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입소자 조치계획서(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[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,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,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] 1부 3.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등기사항증명서,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